-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 의 안 번 호 | 제2462호 |
|---|---|

2020. 05. 13.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05. 01.  최재란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 05. 01.  행정재경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 05. 13.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최재란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등 13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있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동석)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자치법규 중 "근로"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13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노동"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를 제고하는 등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 관련법령

-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대한민국헌법」제32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헌법」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민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는「대한민국헌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1997년 3월 13일 제정된「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35번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한과 의무를 보장하고 있음.
- 또한,「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에서는 "근로"에 대한 정의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반면,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직무를 분장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해 소득으로 생활

하는 사람을 의미함.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근로"와 "노동"의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지난 2017년 11월 박광은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1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행 헌법이 "근로"와 "근로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와 연계하여 현재까지 계류 중임.

**○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우리구 자치법규 중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13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개정 대상 조례 및 주요 내용

| 번호 | 조례명(서울특별시 양천구 생략) | 개정내용 |
|---|---|---|
| 1 | 생활임금 조례 | 제1조 "근로자"→"노동자" |
| | | 제2조 "근로자"→"노동자" |
| | | 제3조 "근로자"→"노동자" |
| | | 제5조 "근로자"→"노동자" |
| | | 제7조 "근로자"→"노동자" |
| | | 제8조 "근로자"→"노동자" |

| | | |
|---|---|---|
| 2 |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근로자”→“노동자” |
| | | 제2조 “취약계층근로자”→“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 “취약계층근로자”→“취약계층노동자”,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 “이주근로자”→“이주노동자”, “장애인근로자”→“장애인노동자” |
| | | 제5조 “근로자의 근로여건”→“노동자의 노동여건”, “근로자”→“노동자”, “근로법률”→“노동법률”, “취약계층근로자”→“취약계층노동자” |
| | | 제6조 “근로”→“노동” |
| 3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 “근로문화”→“노동문화” |
| | | 제2조 “근로형태”→“노동형태” |
| | | 제4조 “근로환경”→“노동환경” |
| | | 제6조 “근로문화”→“노동문화”, “근로환경”→“노동환경”, “근로문화”→“노동문화” |
| | | 제11조 “근로문화”→“노동문화” |
| 4 |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 제2조 “근로하는”→“노동을 하는” |
| 5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7조 “근로지원인”→“노동지원인” |
| 6 |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3조 “야외근로자”→“야외노동자” |
| 7 |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8조 “근로자”→“노동자” |
| 8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3조 “근로소득”→“노동소득” |
| | | 제6조 “근로활동”→“노동활동” |
| 9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 “근로소득”→“노동소득” |
| | | 제4조 “근로의욕”→“노동의욕” |
| 10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2조 “근로자”→“노동자” |
| | | 제4조 “근로환경”→“노동환경” |
| 1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5조 “근로자”→“노동자” |
| 1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조 “옥외 근로자”→“옥외 노동자” |
| 13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 “근로환경”→“노동환경”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에 종속된 의미로 해석되는 "근로자"를 능동적 의미의 "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법령 개정안이 제출 및 발의되고 정부부처 명칭으로 사용(고용노동부)되는 등 용어 변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논의되고 있어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